

유통업계 “전복·굴비 선물세트 1마리씩 포장해야 할 판”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면서 유통업계·외식업계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서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지역 유통업계 ‘시장 위축 우려’=광주지역 모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남산 전복의 가격은 15만(10마리)~30만원(5마리)이었다. 이런 가운데 선물용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에 따르면 15만원짜리 세트의 전복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3마리만 따로 포장해야 하며, 30만원짜리 세트는 마리당 가격(6만원)이 5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무원 등에게는 1마리도 선물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6만원짜리 전복은 1만원어치를 자른 뒤 남은 토막을 팔아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영광굴비의 경우에도 ‘한

한정식집 “장사 자체가 불가능”

교육계 “유감·환영” 반응 엇갈려

변협·기자협회 “정치적 판결”

마리 포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백화점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돼 선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울상=법 시행 초기, 적법이 다소 쉬운 식당 등 외식업계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메뉴 대부분이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을 넘는 곳은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역 한 한정식집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의

식산업연구원은 앞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면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 반응 엇갈려=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할 것과 관련,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사학법인 이사장협의회 관계자도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립교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은 일부 예외를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인 집행위원장은 “사립학교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업무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킨 게 타당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 및 언론계 반응=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헌재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결정을 했다”고 지적했고 기자협회는 “헌재가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길로 나아가려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적으로 민간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광주경찰청 사무차장은 “이 법을 통해 공직자 비리가 사라지면서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부 시행령이 기존에 있던 공무원 청렴 규정에서 후퇴하거나 완화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김지을·오광록·김영호기자 dok2000@

공직자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법’ 개요

김영란법 핵심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1천만~2천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배우자

국가·지방 공무원	124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
학교 교직원	60만
언론사 대표·임직원	20만
전체 배우자	160만

약 400만명 이상 추산

김영란법 허용 상한선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식사대접	3만원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5만원	공선, 음식물 제외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	10만원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장관(원고료 등)	50만원	공직유관단체(강장)	40만원
차관급	40만원	임원	30만원
4급 이상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
5급 이하	20만원		* 공기업 포함

장관급 외부강의 시간 초과 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사례금은 상한액의 1/2

장관급 외부강의 사례금
최대 75만원:
1시간 50만원 + 상한액의 1/2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100만원(직급 구분 없음)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외부강의 시간 초과 시
• 민간인이라는 점 감안·강의시간 1시간 초과해도 100만원의 추가
• 공무와 관련된 강의 시: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 제한
(공공기관의 위원 등의 참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 연합뉴스



박헌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첫 발” 한목소리

부작용·피해 방지 후속대책 나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일단 ‘존중’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부작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현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재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

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터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평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현재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란법’ Q&A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나 위법이나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단.

-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된다.
-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종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각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 ▲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

프로축구 선수 지자체 운영 구단 소속 팬 대상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인정

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든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건설사 직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는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교사와 공기업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

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텀키스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삼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공무수행중 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줬지만 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